

[별표 1]

지정검역물에 대한 범위 등(제3조 관련)

1. 지정검역물

가.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동물

지정 검역 대상		
법규상의 구분	분류학상의 구분	종 류
제1호 우제류 동물 및 기제류 동물	우제목	◦소과: 유우, 육우, 야우, 수우, 야크, 산양, 면양, 영양, 기타 양류 등 ◦사슴과, 기린과, 낙타과(라마 포함), 하마과, 멧돼지과(돼지 포함) 등
	기제목	말과(당나귀, 노새, 버새 등), 맥과, 코뿔소과 등
제2호 개, 고양이	식육목	개과, 고양이과 등
제3호 토끼	토끼목	토끼과(가토, 야토 등)
제4호 닭 칠면조 오리, 거위	닭목	꿩과(닭, 메추리, 꿩) 칠면조과
	기러기목	오리과(거위, 기러기, 오리, 고니 등)
제5호 꿀벌	벌목	꿀벌과(꿀벌에 한함)
제6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이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		상기 이외의 포유동물(고래 제외), 가금 및 조류

나. 축산물

- 1)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
- 2) 동물의 정액·난자 및 수정란

다. 기타

- 1)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
- 2)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
- 3)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·사료원료·기구·건초·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
2. 의뢰검역물

- 1) 수입 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필요로 하는 동물 및 물건
- 2) 의뢰검역물에 대한 수출검역은 수입 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·방법에 따라 실시한다.